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0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위성곤 · 서왕진 · 박지혜
김동아 · 임호선 · 김원이
고민정 · 복기왕 · 진성준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 <u>8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 --- <u>12세</u> ----- <u>6학년</u> ----- ----- ----- -----
7의2. ~ 12. (생략)	7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u>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u> 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④ ----- <u>제1항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u> ----- ----- ----- -----

포함한다.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